

##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154호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 및 「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」 제18조(예고 및 공모)에 따라, 2024년도 해양수산연구개발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01월 25일  
해양수산부장관

# 2024년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예고

## 1. 개요

지원 규모: 1개 사업 2개 과제

사업명	연구개발과제명	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(전체 연구개발기간)	'24년 연구비	과제 공고	선정 평가	연구 착수
해양탄소 재순환 가치사슬 실현을 위한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 개발	선박연료용 e-메탄올 해상 생산플랜트 및 운영 기술개발	260억원 이내 ('24.4.~'28.12. 이내)	7억원 이내	2월	2~4월	4월
	이종 액화가스 운송을 위한 저장 및 적하역 기술개발	90억원 이내 ('24.4.~'28.12. 이내)	10억원 이내	2월	2~4월	4월

\* 작성된 연구개발과제명은 내역사업명으로 추후 공고 시 과제명은 변동될 수 있음

\*\* 연구개발기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과제 수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2. 신청자격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

**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>**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**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>**

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
**<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>**

- 1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3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
- 4. 국립·공립 연구기관
- 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6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
- 7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
**<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>**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2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
- 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
- 5.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
- 6.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

### 3. 신청방법

#### □ 공고 및 신청방법

- (사업공고)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해양수산부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등에 공고 예정
- (제출서류) 세부사업별 공고 시 공고문 참조

#### □ 신청방법: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온라인 접수(iris.go.kr)

- ※ 마감시한까지 [정보입력], [저장], [최종확인] 완료 후 [제출]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
- ※ 아래의 '사전 준비사항'을 확인하고, '신청 후 확인 사항'을 반드시 확인
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

#### ※ 사전 준비사항(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)

-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
- 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연구책임자 그리고 참여연구자 모두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 필요(iris.go.kr)
  - \*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경우: IRIS 회원가입 후 발급
  - \*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경우: IRIS 로그인 후 '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'을 클릭하여 국가연구자번호 전환
  - \* 신청기관 대표자의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제 신청 및 접수 불가

#### ※ 신청 후 확인 사항

- [신청내역 조회/수정]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'신청/접수여부'가 '제출완료'로 표시되는지 확인
-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오류가 없는지 확인
  - \*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\* 공고 및 접수시스템 문의사항은 IRIS 콜센터(1877-2041, 09:00~18:00) 또는 IRIS 홈페이지 '사용문의' 게시판 활용

\*\* 개별공고 시에 접수마감 전, 과제신청을 완료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

## 4. 공모절차 및 일정

### □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절차 및 일정

구 분	시행주체	주 요 내 용
2024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계획 공고 (1월~2월)	해양수산부 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개발과제 목적,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, 보안과제 분류여부, 신청 자격,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등</li> </ul>
↓		
신청서류 접수 (2~3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·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IRIS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*에 제출</li> <li>* IRIS 접속주소: <a href="https://www.iris.go.kr/">https://www.iris.go.kr/</a></li> <li>** 신청서류 접수 결과, 재공고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</li> </ul>
↓		
사전 검토 (2~3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해당 여부,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선정</li> </ul>
↓		
선정평가 (3~4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실시: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</li> <li>*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함</li> </ul>
↓		
연구개발과제 선정 (3~4월)	해양수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 확정</li> <li>다만, 혁신법 제14조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</li> </ul>
↓		
연구개발과제 협약 (4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/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제출</li> <li>해양수산부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-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</li> <li>* 협약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</li> </ul>
↓		
연구개발비 지급 (4월)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</li> </ul>

\*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또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함

## □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

-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성과의 등록·기탁, 연구개발정보의 수집·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충·고도화 및 관리·활용에 관한 사항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륵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\*

\* 협약 체결 시, 연구실 안전교육·훈련 이수확인서(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륵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 2서식)를 첨부서류로 제출

## 5. 문의처

### □ 사업별 문의처

사업명	해양수산부	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
해양 탄소재순환 가치사슬 실현을 위한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 기술개발	해양개발과 (044-200-5664)	해양팀 (02-3460-0301)